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0-77
- 나. 제 안 자: 이홍민의원 외 7인
- 다. 제안일자: 2020년 5월 29일(금)
- 라. 회부일자: 2020년 5월 29일(금)

2. 제출사유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경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소년, 노동인권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라.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상담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 사.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제34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제8조
 - 「근로기준법」 제64조
- 나. 입법예고: 2020. 5. 29. ~ 6. 4.(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취지

2019년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교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47.8%가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 체불 문제가 57%, 정해진 업무 외 다른 일을 시키는 행위가 21.2%이고,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17.9%에 달하는 등 노동현장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학생들이 노동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무려 61.7%의 학생이 그냥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 부당한 노동에 대한 대항을 못하고 주변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근로환경 합동 점검 결과에서도 아르바이트생 52.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청소년에게만 한정되는 것도 아닐 것이나 위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약자로서 청소년 노동 인권이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나타내고 있는 바, 동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도 부합하는 것임.

《 청소년 기본법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 조례안 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담았고, 제3조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음.
- 제4조에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사용자가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제6조에는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노동 3권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음.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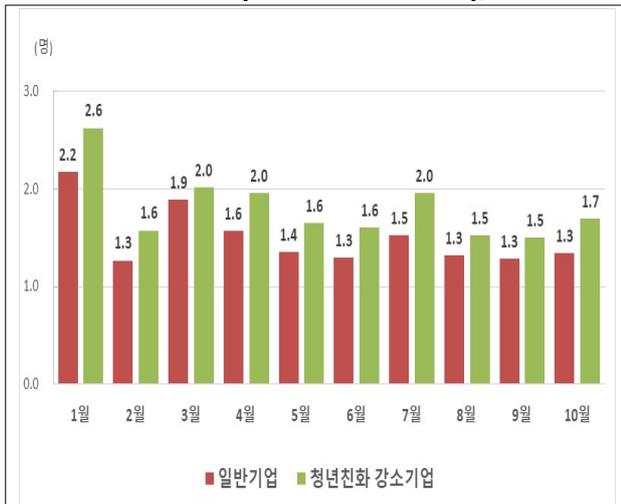
경남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청소년 대상 여론 조사 시 노동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학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왔으며, 서대문구 근로복지센터 주관 토론회에서는 교육대상으로 중학생을 포함하고, 취업 준비생 등 ‘경계에 있는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음.

- 제7조~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11조에서는 관내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게 하여 이 조례안의 대외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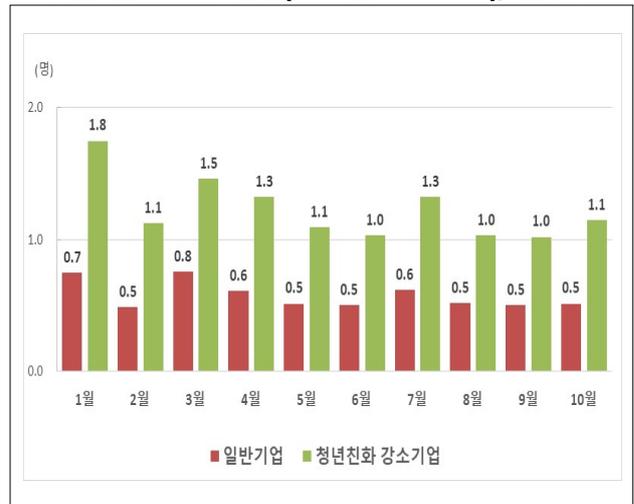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분야’, ‘일·생활 균형 분야’, ‘고용 안정 분야’ 등을 평가하여 우수 기업체를 <청년 친화 강소기업> 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 홍보, 금융 우대, 방송 광고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들 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청년을 6.5명 더 채용해 청년 고용 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1] 참고

[표 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12.20.)

<신규 채용 현황(2019년 1월~10월, 단위:명)>



<청년 신규 채용 현황(2019년 1월~10월, 단위:명)>



-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채용 박람회 우선 초청, 내고장 마포 등 구 홍보매체를 이용한 기업 홍보 등의 지원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광역 17개 중 6곳, 기초 226개 중 41곳 제정

시도명	조례제정 지자체수	시도명	조례제정 지자체수
<u>서울특별시</u>	6	충청북도	1
<u>부산광역시</u>	3	충청남도	4
인천광역시	2	전라북도	1
<u>광주광역시</u>	5	<u>전라남도</u>	7
<u>경기도</u>	12	경상북도	1
<u>강원도</u>	3	경상남도	1
<u>제주특별자치도</u>	1	합계	47

2. 관계 법령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